

일본,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바이오매스는 동식물에서 유래하는 유기물로서 지속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이며, 제품으로써 또는 에너지로써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초반까지 생활 에너지의 약 40%를 목탄과 땀감이라고 하는 목질 바이오매스에 의존하여 왔지만, 그 후 고도경제성장과 에너지혁명의 진전으로 화석 연료를 대량 소비하게 되어 신탄재 수요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 지구 온난화문제와 폐기물문제, 순환형 사회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이용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일본에서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는 “삼림·임업기본계획”, “신에너지로서의 바이오매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대책” 등이다.

최근의 자연지향과 에너지절약 지향이 높아지면서 목질 바이오매스이용에 관계된 지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2003년에 그 단체수는 80여 개에 이른다.

이처럼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단순히 임업·목재산업 관계자만이 아니라 경제계와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전체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용확대를 추진하여 삼림·임업·목재산업의 활성화, 나아가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표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이 함유된 식

품의 생산과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한 가지 유전자변형작물(스페인의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 insect-protected maize)만이 단지 58,000ha 재배되고 있을 뿐이다. 엄격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유럽의 여론이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원으로 유럽 전역의 학계, 규제기관, 식품생산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연구 콘소시엄인 ENTRANSFOOD를 구성하였다.

ENTRANSFOOD는 새로운 식품기술에 관한 부정적 견해들을 통합하고, 이 기술의 장점들을 검토함으로써 GMO에 대한 균형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식량생산 기술의 장점·결점과 비교하여 GM 기술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년 북한 농업 전망과 남북 협력

북한은 잇단 작황 호조와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농업증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량 수급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 증산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의도이다. 셋째, 농업 자체의 성장 뿐만 아니라 농업성장을 통해 공업성장의 기초를 마련코자 하는 의도이다.

이 같은 식량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우선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 필수 농자재를 최대한 확보코자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농업 및 농장관리 방식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분조¹⁾의 규모를 현재보다 더 작은 단위로 줄여 집단영농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족영농제와 유사한 관리조직을 채택하고 분조에게 생산물에 대한 자유 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증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 번째로, 주체농법의 틀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적극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과학적인 농법을 과감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의 힘만으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있고 기초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남북한 협력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지원단체는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준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일부를 개정하고 금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가입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민영재해 보험사도 참여토록 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태풍·우박 등 재해별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손해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거대 재해시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평가 업무를 위하여 손해평가인을 보조할 수 있는 손해평가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부가 금번 개정에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부 농업인 및 손해평가인의 경우 보험원리에 입각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정부의 무상보상제도로 잘못 인식하여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능사”로 오해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이 선량한 농업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료 상승 및 도덕적 해이의 증가로 이어져 농작물재해보험의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²⁾의 객관적인

1) 분조 : 작업반의 하위단위를 분조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분조관리제를 통해 일정한 면적의 토지와 노동력, 역축과 기타 생산수단을 고정시키고 분조 단위로 정보당 생산량 및 노력일 투하 계획을 부여하고 연말에 가서 분조 구성원들의 노력일을 계획된 정보당 생산량의 수행정도에 따라 재평가한 후 분조에게 확정 지불하게 된다.

2) 손해평가: 보험대상농작물이 보상하는 자연재해(태풍·우박 등)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지조사를 통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